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
2023. 6. 22(목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2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,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개요
- 나. 세입·세출의 결산
- 다. 재무제표
- 라. 성과보고서
- 마. 결산서 첨부서류

IV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, 제150조(결산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 승인)
- 관련서류 : 2022회계연도 결산서(안) 및 결산검사 의견서

V. 검토내용

1. 보건소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가.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 (결산서 p)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7,107,932,000	17,906,611,020	17,890,757,720	99.91%
보건정책과	5,372,603,000	5,368,904,530	5,363,156,630	99.89%
건강증진과	9,850,407,000	10,614,004,070	10,614,004,070	100.00%
의약과	1,484,331,000	1,503,366,040	1,503,366,040	100.00%
위생과	400,591,000	420,336,380	410,230,980	97.60%

-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71억 793만 2천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179억 661만 1천원, 세입결산액은 178억 9,075만 7천원으로 징수율은 99.91%임.

나.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
					금액	비율(%)
계	30,267,374,470	26,625,061,257	1,240,925,000	748,684,100	1,652,704,113	5.46
보건정책과	10,034,959,470	7,766,618,910	1,154,925,000	264,916,930	848,498,630	8.46
건강증진과	16,478,684,000	15,617,928,627	0	454,993,290	405,762,083	2.46
의약과	3,080,543,000	2,609,461,250	86,000,000	27,523,880	357,557,870	11.61
위생과	673,188,000	631,052,470		1,250,000	40,885,530	6.07

○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302억 6,737만 4천원이며, 지출액은 266억 2,506만 1천원,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4,092만 5천원, 보조금반납금은 7억 4,868만 4천원, 집행잔액은 16억 5,270만 4천원임.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5.46%입니다.

1) 다음연도 이월사업

<명시이월사업>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 행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계		3,664,881	2,277,165	2,277,165	1,240,925	
보건정책과	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	3,178,192	2,050,432	2,050,432	1,127,758	-'22년 예산 중 21억이 22년 9월 중 순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- '22년 격리치료비 청구건은 모두 지 급하였으나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도 많음
보건정책과	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	355,689	182,233	182,233	27,167	자가진단키트 제공이 중단되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함 자가격리가 지속됨에 따라 재택치료 팀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이월

부서명	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액 행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의약과	자 동 심 장 충격기 관리	131,000	44,500	44,500	86,000	'22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되어 연도내 집행불가

○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3건 12억 4,092만원 5천원임

2) 예산전용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 유
				감액	증액	
기획경제국			59,456	9,600	9,600	
건강 증진과	모 성 아 동 건 강 사 업	201-01 사무관리비	15,240	4,600		간호사(기간제 근로자)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
	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5,160		4,600	
	심 리 상 담 마 음 심 운영	301-12 기타보상금	9,900	2,200		건강증진과-17902(2022.11.14.)호 관련 심리상담 마음 심 사업 직영 운영으로 인한 간판 교체비용
		201-02 공공운영비	1,294		2,200	
		301-12 기타보상금	7,700	2,800		건강증진과-17902(2022.11.14.)호 관련 시간제상담사 고용 승계 및 근무 시간 증가에 따라 12월 인건비 부족분
	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20,162		2,800	

○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건강증진과 3건 960만원임.

3) 집행잔액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현액 (A)	집행잔액 (B)	비율 (B/A)	사 유 별						
				보 조 금 정산잔액	낙 차	찰 액	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미발생	지 잔	출 액	예 비 비
계	30,267,374	1,652,702	5.5	708,718	0	193,639	750,345	0		
보건정책과	10,034,959	848,498	8.5	558,756			22,754	266,988		
건강증진과	16,478,684	405,762	2.5	139,050				266,712		
의 약 과	3,080,543	357,557	11.6	10,894			170,745	175,918		
위 생 과	673,188	40,885	6.1	18			140	40,727		

- 2022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16억 5,270만 2천원이며,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.5%임.
- 집행잔액 사유는,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871만 8천원,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,363만원 9천원, 지출잔액 7억 5,034만 5천원임.

다. 기금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부서명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	929,136	-45,916	64,147	110,063	883,220
식품진흥기	위 생 과	929,136	-45,916	64,147	110,063	883,220

- 2022회계연도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,414만원 7천원이며 사용액은 1억 1,006만 3천원으로 최종 2022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8,322만원임.

라. 예비비 결산현황

1) 801-02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	
합 계				298,845	165,406	0	133,439	
보건정책과	감염병관리체계구축운영	신종감염병예방대책	의료및비	42,500	22,135		20,365	
건강증진과	가족건강및출산장려지원	코로나19예방접종	의료및비	256,345	143,271		113,074	

- 2022회계연도 보건소 재해·재난목적예비지 지출액은 1억 6,540만 6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3,343만 9천원임.

2. 검토의견

-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5.5%임.
-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,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,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,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관계 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6. 9.>

1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2.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